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0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건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요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요령구성 【총 4장 18조】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목적, 용어 정의
제2장	운영체계 (제3조~제5조)	▪ 건강관리위원회, 진단기관 ▪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특례
제3장	단계별 처리내용 (제6조~제13조)	▪ 진단 (신청·접수, 신청대상, 진단실시 등) ▪ 처방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결과 회신 등)
제4장	보칙 (제14조~제18조)	▪ 사업관리비 지급, 포상, 비밀유지 의무, 운영 지침 제정 등

② 주요 개정 내용

- 건강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이 내용에 따른 ‘처방에 따른 지원사업 연계’에서 ‘처방내용에 적합한 지원사업 종합안내’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근거 조항 마련(안 제10조)
 - * (현행) 진단 ⇒ 처방 ⇒ 치유 → (개선) 진단 ⇒ 처방 ⇒ 정책정보안내
- 건강진단 신청기업의 애로유형에 따라 진단기관 명확화(안 제8조)
 - * (현행) 중진공, 신·기보, 지방중기청 구분없이 상담·신청 가능
→ (개선) 자금⇒중진공, 보증⇒신·기보, 기타⇒지방청으로 분류
- 처방전 작성·발급, 심의·의결 및 추천 등 폐지된 절차 관련 조항 삭제
- 경영개선 건강진단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근거조항 마련
 - * (제12조③)청장은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해 우수 전문가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요령의 주요내용 개정에 따른 조문 순서 재배치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채도전성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채도전성장과
(전화 : 042-481-8965, Fax : 042-481-6849)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처방전 발급</u>”이란 제5조에 따른 기업건강 진단기관(이하 “<u>진단기관</u>”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이하 “<u>처방전</u>”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u>위원회</u>”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는 활동을 말한다.</p> <p>4. “<u>맞춤형 치유</u>”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처방전’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지원기관이 진단기업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처방</u>”이란 진단결과에 따라 확인된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에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p> <p><삭 제></p>
<p>제2장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체계</p> <p>제3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①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하 “<u>시스템</u>”이라 한다)」은 ‘진단’,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의 3단계로 운영된다.</p> <p>②시스템의 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p> <p>1. 진단 착수일 : 진단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p> <p>2. 처방전 발급일 : 진단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p> <p>3. 처방전 추천일 : 진단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p>	<p>제2장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체계</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진단 신청접수한 날은 진단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 본다.</p>	
<p>④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단 신청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위원회)①(생략)</p>	<p>제3조(위원회)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②위원회는 관할 지역 중소기업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p>
<p>1. 위원회 관할 지역 중소기업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p>	<p>1 ~ 5. <삭 제></p>
<p>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추천에 관한 사항</p>	
<p>3.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p>	
<p>4. 사후관리에 따른 맞춤형 치유사업 추천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중소기업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1 ~ 2. (생략)</p>	<p>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 <u>영역본부장 또는 지점장</u></p>
<p>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 <u>지역본부장 또는 기술평가센터장</u></p>	<p><삭 제></p>
<p>4. <u>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u></p>	
<p>5. <u>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u></p>	<p>4. 지방청 건강관리 업무 담당 과장</p>
<p>6. <u>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역지사장</u></p>	<p>5.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u>위원장이</u> 정하</p>
<p>7. <u>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부장 또는 소장</u></p>	
<p>8. 지방청 건강관리 업무 담당 과장</p>	
<p>9.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u>청장이</u> 정하는</p>	

현행	개정(안)
<p>자</p> <p>제5조(진단기관)진단과 처방전 발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기보 <u>본부평가센터</u> 또는 <u>기술평가센터</u></p> <p>제5조의2(공동진단기관) 분야별 진단과 처방전 발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공동진단기관으로 한다.</p> <p>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p> <p>2. 지역신용보증재단</p> <p>3.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p> <p>4. 기타 분야별 진단과 처방전 발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p> <p>제3장 시스템 단계별 처리내용</p> <p><신 설></p>	<p>는 자</p> <p>제4조(진단기관)진단 역량과 자체 지원사업 및 심사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보 <u>지점</u></p> <p><삭 제></p> <p>제5조(경영에로 기업에 대한 특례) 청장은 경영에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와 「경영개선 건강관리」의 특례조항을 두어 진단 신청 및 접수, <u>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3장 단계별 처리내용</p> <p>제6조(처리기한) ①기업이 진단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고 처방내용을 포함한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이 기업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제1항에서 따른 진단 신청 접수 기간은 월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p>

현행	개정(안)
<p>제6조(신청대상) (생략)</p> <p>제7조(신청 및 접수) ①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상담신청할 수 있다.</p> <p>②진단기관은 위기관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진단실시) ①~② (생략)</p> <p>③제5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기관은 제4조 제2호 진단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신청 기업의 업종, 생산품 및 보유기술, 애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p> <p>④진단 실시 일수는 최대 6 Man-Day(이하 “MD”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p>	<p>경우 진단 신청접수한 날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p> <p>③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단 신청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신청대상) (현행과 같음)</p> <p>제8조(신청 및 접수) ①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애로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상담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자금 : 중진공 지역본(지)부 2. 신용보증 : 신보 영업점 3. 기술보증 : 기보 지점 4. 기타 : 지방청 <p>②진단기관은 정책 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진단기관의 관리 기업으로서 경영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9조(진단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제4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기관은 제4조 제2호 진단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신청 기업의 업종, 생산품 및 보유기술, 애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p> <p>④진단 실시 일수는 별표 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단의</p>

현행	개정(안)
진단 실시 일수는 별표 제2호와 같다. 제10조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할 수 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단기관이 2~4 Man-Day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일과 제2항에 따른 PT실시는 각각 0.5MD에 포함할 수 있다.
⑤진단비용은 30만원/1MD으로 한다. 3MD 이내는 진단기관별 진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하고, 4MD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신청 기업이 초과비용을 부담한다.	⑤진단비용은 1MD당 30만원으로 하며 진단기관별 해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한다.
<p>제9조(공동진단 실시) ①진단기관은 진단과정에서 공동진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공동진단기관은 자체 조사 또는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심사인력을 파견하여 공동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공동진단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진단 실시 일수(MD)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동진단 실시 비용은 공동진단기관의 자체비용으로 한다.</p> <p>④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진단기관은 그 결과를 공동진단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0조(진단보고서 작성)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진단보고서 작성) (생략)</p> <p><신 설></p>	<p>제11조(진단결과 회신) ①진단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처방내용 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p>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2(전문가 평가 실시) ①진단기관은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전문가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가 선정 및 불성실 전문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1조(처방전 작성 발급) ①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제12조에 따른 ‘건강관리 처방 메뉴얼’을 참조하여 별지 제2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방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기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2.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내역(맞춤형 치유사업 또는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 과제 수에 맞게 처방내역 작성) <p>②진단기관은 내부결재를 거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처방전 메뉴얼)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진단기관의 원활한 처방전 발급을 위하여 「건강관리 처방 메뉴얼」을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p>	<p>있을 경우 진단기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p> <p>제12조(전문가 평가 실시 등) ①진단기관은 전문가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는 전문가 관리 및 운용을 방안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③청장은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해 우수 전문가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3조(처방전 심의) ①기업건강관리팀은 처방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 심의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2.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의 추가를 의결할 수 있다. 3.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맞춤형 치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 완료일이 늦은 맞춤형 치유사업을 말한다)의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할 수 있다. <p>③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3조의2(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특례) ①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된 사업전환 처방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른 지방청장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조에 따른 진단 및 타당성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요령 제8조에 따른 진단실시를 생략하고, 처방전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4조(추천서 송부) ①기업건강관리팀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별지 제5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는 별지</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지원기관에는 별지 제4호의 「추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②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 15조(맞춤형 치유) ①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간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맞춤형 치유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이 제출한 추천서를 근거로 맞춤형 치유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지원기관이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지원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 실적(전월말 기준)을 매월 10일까지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 16조(사후관리) ①기업건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와 기업현장 에로사항 해결 업무를 하여야 한다.</p> <p>1. 진단기업이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맞춤형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p> <p>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자체 치유과제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p>	<p>제 13조(사후관리)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와 기업현장 에로사항 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1. 진단에 대한 만족도, 경영개선에 따른 성과 등 조사분석</p> <p>2. 진단기관 자체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관리</p> <p>3.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 및 진단기업의 건의사항 수렴</p>

현행	개정(안)
<p>3. 진단기업 애로사항 및 치유사업 조사보고(진단기관에서 조사한 애로사항 및 치유사업 포함)</p> <p>4. 진단기업의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p> <p>5. 공장설립, 노무, 보건위생, 세무, 소방, 환경, 법무 등 기업현장 애로사항 등 행해결 지원</p> <p>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진단기업에 대한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에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특례) 정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와 「경영개선 건강관리」의 특례조항을 두어 진단신청 및 접수, 진단 실시,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17조(사업비관리 지급) (생략)</p> <p>제18조(포상) (생략)</p>	<p>제14조(사업비관리 지급) (현행과 같음)</p> <p>제15조(포상)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위원회, 진단기관, 지원기관, 전문가 또는 기업건강관리팀(이하 “관계자”라 한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진단기업의 비밀을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 ③(생략)</p> <p>④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개선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위원회, 진단기관, 전문가 등 건강관리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진단기업의 비밀을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0조(운영지침의 제정 등)</p>	<p>제17조(운영지침의 제정 등)</p>																																																																									
<p>제21조(존속기한)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5일까지로 한다.</p> <p>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5년 4월 5일까지로 한다.</p>	<p>제18조(존속기한)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p> <p>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별표 제2호] 상시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p>	<p>[별표 제2호] 상시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th> <th>2MD</th> <th>3MD</th> <th>4MD</th> <th>5-6MD</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업(C)·광업(B)·운수업(H)</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매 및 소매업(G)</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td> <td>5인</td> <td>10인</td> <td>30인</td> <td rowspan="5">50인 이상</td> </tr> <tr> <td>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r> <tr> <td>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td> <td>~</td> <td>~</td> <td>~</td> </tr> <tr> <td>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td> <td>10인</td> <td>30인</td> <td>50인</td> </tr> <tr> <td>건설업(F) 中</td> <td>미만</td> <td>미만</td> <td>미만</td> </tr> <tr> <td>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5-6MD	제조업(C)·광업(B)·운수업(H)					도매 및 소매업(G)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5인	10인	30인	50인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이상	이상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10인	30인	50인	건설업(F) 中	미만	미만	미만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th> <th>2MD</th> <th>3MD</th> <th>4MD</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업(C)·광업(B)·운수업(H)</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매 및 소매업(G)</td> <td></td> <td></td> <td></td> </tr> <tr> <td>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td> <td></td> <td>5인</td> <td rowspan="5">50인 이상</td> </tr> <tr> <td>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td> <td></td> <td>이상</td> </tr> <tr> <td>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td> <td></td> <td>~</td> </tr> <tr> <td>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td> <td>5인 미만</td> <td>50인</td> </tr> <tr> <td>건설업(F) 中</td> <td></td> <td>미만</td> </tr> <tr> <td>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제조업(C)·광업(B)·운수업(H)				도매 및 소매업(G)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5인	50인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5인 미만	50인	건설업(F) 中		미만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5-6MD																																																																						
제조업(C)·광업(B)·운수업(H)																																																																										
도매 및 소매업(G)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5인	10인	30인	50인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이상	이상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10인	30인	50인																																																																							
건설업(F) 中	미만	미만	미만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제조업(C)·광업(B)·운수업(H)																																																																										
도매 및 소매업(G)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5인	50인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5인 미만	50인																																																																								
건설업(F) 中		미만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현 령	개 정(안)
<u>건설업(41224)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u>	<u>(41224)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u>
<p>[별지 제1호]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 14페이지 참조 ></p> <p>[별지 제2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p> <p>[별지 제3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기업용)</p> <p>[별지 제4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지원기관용)</p> <p>[별지 제5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p>	<p>[별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 14페이지 참조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제도전성장과	
연 락 처	(042) 481 - 8965